

'25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안건 ①

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

2025. 12.

관계기관 합동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2
III. 제도개선 방안	4
1. 중앙회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	5
2.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	8
3.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	10
4.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	13
IV. 향후 계획	17

I. 추진 배경

- 상호금융권은 당초 '상부상조' 정신과 '인적 유대'를 근간으로 하는 조합원 중심의 비영리 지역금융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,
 - 비과세 예탁금 등에 기반하여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대*됨에 따라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가

* 상호금융권 총자산 추이 (조원): ('15) 533.3 → ('25.9) 1072.2 (+101.1%)

- 한편, 외형 성장에 치중하고,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원래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잠재리스크가 확대된 상황

- PF 등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증가로 부실 위험이 누적*

* 상호금융권 부동산업·건설업 익스포져 및 연체율 추이(조원, %):
('15) 14.8 (1.97) → (**'25.9) 182.9 (10.44)**

- 또한,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, 미흡한 내·외부통제로 금융사고도 지속되고, 리스크 관리 역량에도 한계

-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확대는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, 지역·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기반을 약화

-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 소상공인, 서민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제약

☞ 상호금융권의 체질개선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,

- 지역·서민에게 충분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 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·정비가 필요

II. 현황 및 문제점

* 새마을금고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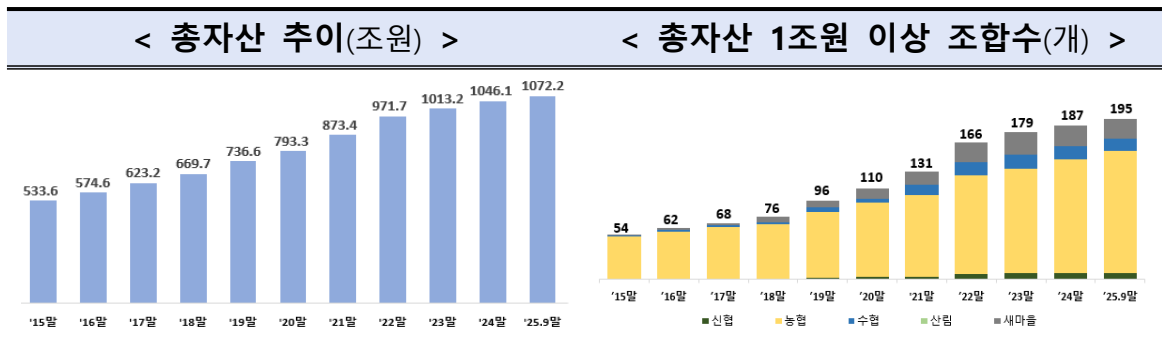
1] 급격한 외형 성장

- '25.9말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1,072.2조원, '15년(533.3조원)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*

* '25.9말 국내 은행 총자산의 약 23%, 저축은행의 약 9배 수준

※ 조합·금고 수는 구조조정을 거치며 지속 감소 ('14년 3,680개 → '25.9말 3,465개)

- 총자산 1조원 이상 대형조합은 195개 ('15년 54개 대비 +141개), 조합 평균 자산은 3,094.4억원('15년 1,476.9억원 대비 +1,617.5억원)



2]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 위주의 운영으로 건전성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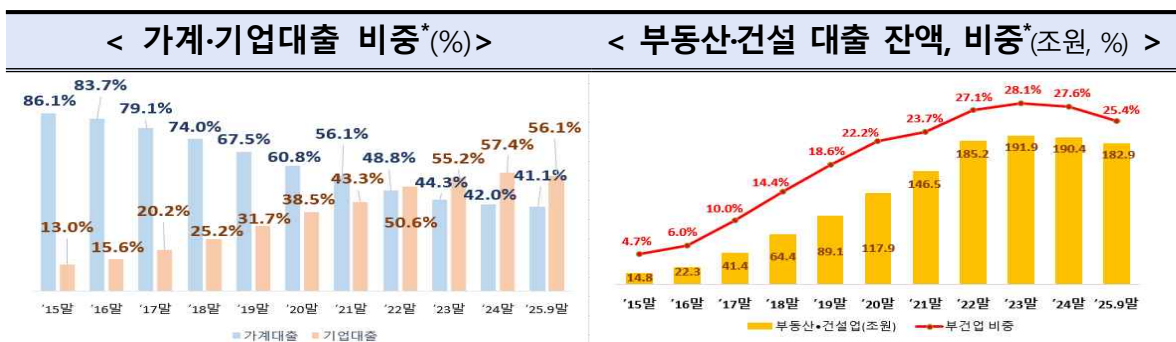
- '25.9말 총여신은 719.6조원으로, '15년말 比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12배 증가하는 등 기업대출 중심으로 증가

* '15년 → '25.9말 대출 추이(조원):

(전체) 316.6 → **719.6**, (가계) 272.6 → **295.7**, (기업) 41.2 → **403.6**, (부건업) 14.8 → **182.9**

- 지방·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그간 집중 취급한 부동산·건설업 대출*, 공동대출 등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

* 상호금융권 부동산업·건설업 연체율('25.9말): 10.44%



* 비중은 총대출 比

3 개별 조합 건전성 관리 역량 미흡

- 상호금융권은 미흡한 전문성, 개별 조합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여신심사 조직·인력 등 역량이 부족
- 상환능력 평가 대신 담보에 의존하는 여신 관행*이 지속되면서 개별 조합의 자체 건전성 관리가 어려운 상황

* '25.9말 총여신 719.6조원 구성 현황 (조원, %):

담보대출: 661.5^{조원} (91.9%), 신용대출: 34^{조원} (4.7%), 보증대출: 24.1^{조원} (3.3%)

4 건전성 규제차이 지속

- 여·수신업무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 기능을 수행함에도, 타 업권에 비해 건전성 규제가 느슨*한 상황

* 예) 거액여신한도, PF 대출한도 미도입 등

- 자기자본 규제비율 수준이 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, 업권간 규제 차이*도 여전히 지속

* 예) 적기시정조치 기준: (신·수·산) 2%, (농) 5%, (새) 4%

5 미흡한 내·외부통제

- 상호금융은 선출된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임·직원 비위가 만연하고 내부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우며,

-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있어 중앙회가 조합을 독립적으로 관리·감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

- 또한, 지배구조법, 금소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, 상임감사·외부 회계 감사 등 최소한의 내·외부통제 장치만을 운영

- 이는 횡령·배임 등 만성적인 금융사고*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
* 최근 5년('20~'24년)간 상호금융권 횡령·배임 등 금융사고 현황: 263건, 1,789억원

III. 제도개선 방안

< 기본 방향 >

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및 체질 개선을 통한
지역·조합원·서민 중심의 성장 기반 마련

<p>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기준 상향 ② 중앙회 대체투자 건전성 관리 강화 ③ 중앙회·조합의 유동성 규제 개선
<p>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 ② 거액여신 편중 위험 등 관리 강화 ③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
<p>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부동산·건설업 대출규제 강화 ② 공동대출·PF 리스크관리 강화 ③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
<p>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임원 자격제한 요건 정비 및 편법 장기재임 방지 ② 조합 외부감사 대상 확대 및 주기 단축 ③ 조합 상임감사 선임 의무 강화 ④ 대형조합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

1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

◇ 상호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및 유동성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

① 중앙회 경영지도비율(RWA 대비 자기자본) 기준 상향

- **(현행)** 대체투자·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운용 확대로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우려 제기
 - 중앙회의 자본 관련 경영지도비율 기준(자본 규제비율)*이 타 업권 대비 낮은 수준으로,
 - * 위험가중자산 比 자기자본(적립금) 비율: (산·새) 5% (농수산) 2% / (은행) 8% (저은) 7%
 - 중앙회가 조합의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, 위기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완충 기능이 제한되는 측면
 - 다만, 미국채 등 안전자산의 경우에도 위험가중치를 100% 적용* 하는 것은 은행 등 타 업권 자본규제에 비해 과도한 측면
 - * (상호) 해외국채는 '기타 채권 및 자산'으로 분류 → 위험가중치 100% 적용
- **(개선)** 중앙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영지도비율 기준 상향
 -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(7%)으로 상향하되, 중앙회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차등 부여 감독규정
 - 경영지도비율 기준 상향에 따라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, 비율 준수 여부를 보아가며 자산별 위험가중치의 합리적 조정* 검토 세칙
 - * 예) 해외 국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차등화

< 중앙회 자본 규제비율 기준 상향 일정 >

(단위 : %)

구분	'25.6말	현행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	'34
신협	12.42	5	6	6.5	7						
새마을	15.26										
농협	4.91	2	4	4.5	5	5.5	6	6.5	7		
수협	6.86										
산림	3.69	2	3	3.5	4	4.5	5	5.5	6	6.5	7

② 중앙회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강화

□ **(현행)**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 리스크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아 리스크 현실화 시점에 손실흡수능력이 급격히 악화 우려

① 대체투자 유가증권 대부분이 건전성 분류 대상에서 제외*(감독규정 별표1-1)되어 '고정이하자산 비율' 등이 왜곡

* 결산일 현재 '시장가격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증권'(해외부동산·SOC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, 환율·금리 구조화예금과 같은 파생결합증권 등)은 건전성 미분류

② 펀드 평가시 최근 부실이 미반영된 과거 기준가를 그대로 인용하는 낙관적 평가 관행이 만연

□ **(개선)** 중앙회의 대체투자 유가증권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^{모범규준}

① 대체투자 유가증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의무화 및 부실 우려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 세분화

<부실 우려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예시>

- ① 이자·배당 중단: 중단 즉시 요주의, 3개월 이상 지속시 고정 이하 분류(이자·배당 재개시까지)
- ② EOD 발생: 고정 이하 분류(해소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)
- ③ 손상차손 인식: 고정 이하 분류(손상차손 전액 환입시까지 유지)
- ④ 만기연장·이자유예 등 투자조건 조정: 요주의 이하 분류(만기시까지 유지)

②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은 부실우려사유 발생시 외부기관의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되, 취득가액 대비 일정비율 차감*도 허용

* 예) 유가증권 취득가액에서 대출자산 총당금 적립비율과 유사한 수준 차감
(예: 요주의 10%~15%, 고정이하 중 회수예상가액 內 20%, 초과 55% 등)

③ 高 LTV·중후순위 등 고위험투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특별 승인 대상에 추가하고, 트렌치별(변제순위) 투자한도 신설*

* 중앙회에 리스크가 높은 중·후순위 트렌치 익스포져 한도설정 의무 부여

④ 투자정보 입수·관리체계 구축, 외부운용사 평가기준 마련, 사후관리현황 이사회 보고* 등 내부 통제 강화

* 대체투자 부실화시 중앙회 재무·경영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

③ 중앙회 · 조합의 유동성 규제 개선

- **(현황)**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유사시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중앙회 중심으로 유동성을 관리
 - 다만,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정기예치금은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즉시 유동화가 가능하나 3개월 초과분은 유동성 지표*에 미반영
 - *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유동성비율 산정
 - 중앙회 중심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상호금융업권 특성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규제 부담은 상대적으로 조합에게 편중

- **(개선)** 조합과 중앙회의 실질적인 유동성 리스크 분담 구조를 반영하여 유동성 지표 산정 방식을 개선해 유동성 관리 강화^{세칙}

① (중앙회)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정기예치금의 30%*를 중앙회 유동부채에 포함**하여 중앙회 차원의 유동성 관리 강화

- * 세척상 요구불예금 등 만기가 없는 예금이 유동부채에 반영되는 비율(30%)과 동일
- ** 조합이 정기예치금을 담보로 대출한 잔액은 유동부채에서 제외

② (조합)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정기예치금을 조합 유동자산으로 인정하되, 중앙회로부터 받은 담보대출 잔액은 제외*

- * 예) 정기예치금 100억원, 예치금담보대출 30억원 → 유동자산으로 70억원 인정

< 조합의 중앙회 정기예치금 관련 유동성 지표 산정기준 개선방안 >

구분	현행	개선*
중앙회 유동부채	잔존만기 3개월 이내	잔존만기 3개월 이내
	-	잔존만기 3개월 초과분의 30%
조합 유동자산	잔존만기 3개월 이내	잔존만기 3개월 이내
	-	잔존만기 3개월 초과분

* 정기예치금을 담보로 대출한 잔액은 제외

2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

◇ 확대된 자산 규모에 걸맞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여신업 무절차 내부통제 강화·한도 규제 신설 등 여신 건전성 제고

①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

□ (현행) 신탁·수협·산림조합은 자산규모에 비해 최소 순자본비율이 낮아 손실흡수능력 제고 유인이 부족한 상황

* 최소 순자본비율: (신·수·산) 2%, (농) 5%, (새) 4%

- 즉,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, 부실 우려 조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
- 또한, 신탁은 타 상호금융권과 달리 경영개선명령 제도가 없어,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부실조합에 대한 이행 강제수단이 부족

< 상호금융권 적기시정조치 기준 >

구분(조치권자)	기준	신탁	수협·산림	농협	새마을
경영개선권고 (중앙회 ¹⁾)	순자본비율	2% 미만		5% 미만	4% 미만
	경영(실태)평가	종합 3등급 이상 &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			
경영개선요구 (중앙회 ¹⁾)	순자본비율	△3% 미만		0% 미만	
	경영(실태)평가	종합 4등급 이하	종합 5등급		종합 4등급 이하
	기타	'권고' 조치 미이행 등			
경영개선명령 (중앙회 ¹⁾)	순자본비율	無	△15% 미만	△7% 미만	
	기타	부채가 자산을 초과, '요구' 조치 미이행 등			
경영관리(지도) (금감원 중앙회 ¹⁾)	순자본비율	△15% 미만		-	
	기타 ²⁾	부실대출 보유로 자기자본 잠식 우려, 예적금 지급 불능 등			

* 주1) 농·수·산은 중앙회, 새마을은 행안부 / 주2) 업권별로 세부요건 상이

□ (개선) 신탁·수협·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'30년까지 4%(새마을금고 수준)로 단계적으로 상향^{감독규정}

- 신탁은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경영개선명령 도입^법

< 적기시정조치 대상 최소 순자본비율 상향(안) >

(단위 : %)

구분		신탁·수협·산림				새마을	농협
		현행	'27말	'28말	'29말		
적기 시정 조치	권고	2	2.5	3	3.5	4	5
	요구	△3	△2.5	△2	△1	△0	0
	명령	△15	△13	△11	△9	△7	△7

② 거액여신 편중 위험 등 관리 강화 (부실 정리 지원 병행)

- **(현행)** 타 업권과 달리 거액여신한도 규제가 없어,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
 - '21.7월부터 거액여신한도 규제를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중 이나,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로 실효성이 부족

< 거액여신 행정지도 주요내용 >

- ① **(적용대상)**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1,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
- ② **(정의)** 자기자본의 10% 또는 자산총액의 0.5%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
- ③ **(한도)**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% 중 큰 금액

- **(개선)**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범제화하되, 규제 실익을 감안, 총자산 2,000억원 이상 조합(금고)으로 적용 대상 한정*
 - * '24년말 기준 1,537개 조합·금고에 적용 (전체 3,484개 比 44.1%)
 - 다만, 한도규제로 조합 부실채권 정리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, 부실채권 정리로 인한 일시적 한도 규제 위반에는 예외 적용*
 - * 예) 조합 간 합병으로 거액여신한도 초과시 한도초과 해소의무 유예 (예: 3년)

③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

- **(현행)** 상호금융권은 여신업무 내부통제가 미흡하여 임직원 연루대출 등 부당대출*이 빈발하고 내부통제 준수문화가 미흡
 - * 예) 고가 담보감정액 또는 허위의 고가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한 대출 취급 등
- **(개선)** 여신업무 전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확립^{모범규준}
 - ① 주요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화*하고, 예외 적용 시 최고책임자 (조합장) 승인을 의무화**하여 여신업무 절차 실효성 확보
 - * 예) 현장조사 실시 내용 전산 입력, 미입력 시 여신절차 진행 불가
 - ** 예) 감평법인 임의 선정시 조합장이 그 적정성, 증빙자료를 확인 후 승인
 - ② 중앙회 지원 下 거액여신에 대한 심사 강화, 여신심사 자격요건 도입 등 조합 여신심사 역량 강화
 - ③ 임·직원 윤리교육 확대로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 및 내부통제 준수 의식 고취

3

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[부동산·건설업·PF → 공동유대·지역·서민]

◇ 상호금융권이 부동산·건설업 대출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서민 신용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 설계

① 부동산·건설업 대출규제 강화

□ (현행)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쏠림*으로 비수도권·서민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

- * ① 상호금융권 총여신 중 기업대출 비중 추이(%): ('15) 13.0 → ('25.9말) 56.1
- ② 상호금융권 기업대출 중 부동산업·건설업 대출 비중('25.9말, %): 45.3

○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개별 조합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

□ (개선) 부동산·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부담을 상향하여 조합 자산구성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 감독규정, 세칙

① 순자본비율 산출시 분모값에 부동산·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%를 적용

② 저축은행과 유사*하게 상호금융권에 PF 대출한도를 신설하고, 합산한도에 PF 대출을 추가

* 총여신 비 PF 대출 20%, 부동산업·건설업 각 30%, PF+부동산업+건설업 합 50%

- 단, 부동산업·건설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·단체조합*은 업종별 대출한도 적용 제외

* 예) A 건설기계 신협 (건설업 비중 57.6%, 부동산업 비중 0%)

② 공동대출* · PF 리스크관리 강화

* 2개 이상 조합이 동일 채무자에 동일 순위 담보권을 취득하는 담보대출 → 주로 토지담보대출, 미분양집합건물 대출 등

- (현행) 공동대출 특성상 차주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한 세밀한 여신관리나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곤란하여 부실이 심화
 - 다만, 현행 규제는 타 업권과 달리 공동대출 방식의 PF 대출만 사업성 평가 대상으로 규율하여,
 - 조합 단독 PF 대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
- (개선) ①공동대출 규제를 강화하고, 상호금융권 ②PF대출에 대한 별도 모범규준을 신설하여 리스크 관리 공백 해소
 - ① 공동대출 적용범위 확대 및 공동대출 취급·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공동대출 추가 부실을 예방^{모범규준}

< 공동대출 규제 강화 주요 내용 >

내용		현행	개선
적용범위 확대	① 적용대상	신·농·수·산	신·농·수·산+새
	② 총여신 比 한도규제	공동대출 15% 이내	공동대출+비우량 연계대출* 20% 內 * 중앙회 30% 미만 참여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
중앙회 책임강화	③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 검토	사전심사 의무 없음 (중앙회별 자체 검토)	취급합산액 70억원 이상 중앙회 사전검토
	④ 200억원 이상 거액 공동대출 중앙회 참여 의무화	참여 의무 없음	중앙회 참여 또는 건전성 우수조합* 참여시에만 가능 * 예) 총당금 적립률 150% 이상, 연체율 상위 30% 내 등
취급요건 강화	⑤ 미분양집합건물 담보대출 취급 기준 강화	실제 분양/임대율 70% 이상인 경우 + 감정평가서상 70% 이상 분양 예상시	실제 분양/임대율 70% 이상인 경우 ('70% 이상 분양 예상시' 삭제)
	⑥ 70억원 미만 공동대출시 업무구역 內 취급	제한 無	조합 영업점이 속한 권역 내로 한정

- ② PF 사업성 평가기준 및 부실사업장 경·공매 처리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*을 별도로 신설하여 PF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고^{모범규준},
 - * PF 대출 범위·사업성 평가 근거 명시, PF 대출 자기자본비율 20% 단계적 적용 등
 -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던 조합 단독 PF대출도 평가 실시^{모범규준}

③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

□ (현행) 조합이 부실채권*을 장기간 재구조화·정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정리촉진 유인 저하

*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·부실우려인 PF대출,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된 대출

○ '고정이하'로 분류시 총당금을 일시에 적립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추가 적립의무가 없어 상·매각 유인 부족

○ 부실채권 평가시 적용되는 예외 기준이 현실과 괴리되어 회수예상가액이 과대평가되고, 총당금이 과소적립되는 경우가 빈번

< 부실 토지담보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>

구분	"고정"	"회수의문" (또는 "추정손실")
원칙	①	②+③
예외*	①+②	③
총당금 적립률	24%	66% (또는 100%)

①	②	③
공시지가	감정평가액	장부가액

* ①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내
 ② 3개월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
 ③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내
 ④ 총대출금 비 담보가액이 150% 이상

□ (개선) ①장기 미정리 부실 PF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, ②부실 대출의 회수예상가액 예외 적용 범위를 축소 감독규정, 세칙

① PF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PF(유의·부실우려)로 평가된 경우,
 - 일정기간(유의 2년, 부실우려 1년) 경과시 경·공매 착수 여부를 불문하고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

- 다만, 미연체·연체기간 3개월 미만이거나 소송진행·캠코 공매 개시 등으로 경공매 진행 불가시 예외 인정

② 고정이하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시,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,

- 담보비율이 150% 이상이라도 다른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대로 평가*

* 예) 대지의 경우 2년내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'공시지가로 회수예상가액 산정

4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

◇ 임원 자격 정비, 외부감사·상임감사 확대, 대형조합 내부통제 확립,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으로 지배구조·내부통제 개선

① 임원 자격 제한 요건 정비 및 편법 장기재임 방지

□ (현행) 타 업권에 비해 조합 임원에 대한 결격요건, 임기제한, 제재 기준 등이 느슨하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지속

< 업권별 임원자격 제한(퇴직자 제재 포함) 및 조합장(이사장) 연임 관련 규정 >

구분	신협	농협	수협	산림	새마을	지배구조법	
임원 자격 제한	정직 이상 ¹⁾	면직 ¹⁾			정직 이상 ¹⁾	문책 이상 ¹⁾	
퇴직 임직원 제재	가능	불가능			가능	가능	
경과기간 ²⁾	정직: 6년 면직: 7년	-			정직: 6년 면직: 7년	없음 ³⁾	
조합장 임기	4년					-	
연임제한	상임	2회 연임 可					-
	비상임	2회 연임 可	제한 無	1회 연임 可	제한 無	2회 연임 可	-

주 1) ① 상호금융권 자격제한 기간: 직무정지(정직) 4년(신협·금고), 개선·해임(면직) 5년(공통)

② 지배구조법상 자격제한 기간: 문책·감봉 3년, 직무정지(정직) 4년, 해임(면직) 5년

2) 퇴직 이후 조치를 받았더라도 퇴직 후 경과기간 도과시 임원자격 제한 효과 소멸

3) 퇴직후 기간과 관계없이 위법행위 적발시로부터 자격제한 기간동안 임원으로 선임 불가

□ (개선) 상호금융권의 ①②임원 자격제한 요건을 「지배구조법」 수준으로 강화하고, ③과도한 장기재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^법

① 「지배구조법」상 임원자격 제한 요건*을 상호금융권에 도입

* (자격제한) 문책·감봉 이상, (기간) 문책·감봉 3년, 직무정지(정직) 4년, 해임(면직) 5년

② 농협·수협·산림조합의 퇴직자 제재근거* 마련

* 「신협법」 특례조항(§95)에 농·수·산림의 퇴직 임직원 제재근거 조항(동법 §84의2) 추가

③ 농협·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(이사장) 연임을 제한하고, 상호조합에 편법적 연임제한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* 도입

* ① (1) 잔여임기 2년 이하 조합장이 중도퇴임시 1회 재임으로 간주,

(2) 임기 만료 조합장 2년 내 조합장 선임시 연임으로 간주 (새마을 既도입)

② 前 조합장에 대해 조합 상임이사 재취임 제한 (신협 우선 도입)

② 조합 외부감사 대상 확대 및 주기 단축

□ **(현행)** 상호금융권은 「외부감사법*」이 미적용되어 타업권에 비해 외부감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기관별 규제차이 존재

*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일정규모 이상 회사*에 적용
 ※ ①자산총액 500억원 이상, ②매출액 500억원 이상, ③다음 4개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(자산총액 120억원·부채총액 70억원·매출액 100억원·종업원 수 100명 이상)

○ 이로 인해 일부 상호금융권은 특정 연도에 검증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공시*함에 따라 조합 회계정보의 신뢰도가 저하

* 예) 농협은 조합장 임기 4년 중 1년만 외부감사 실시

○ 예금수취기관으로서 요구되는 투명성, 금융사고 예방 효과 등 고려시 재무제표에 대한 제3자 검증이 필요

< 상호금융 업권별 현행 외부감사 실시 기준 >

구 분	신협	농협	수협	산림	새마을	
자산총액	300억원	500억원	300억원	500억원	500억원	3,000억원
감사주기	매년	4년	2년	2년	2년	매년
감사의뢰	금감원	조합 자체	해수부	산림청	행안부	

□ **(개선)** 조합 외부감사 대상 조건 및 주기를 신협 수준으로 일원화 하여, 총자산 300억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감사 실시^{법, 시행령}

※ 현재 총자산 300억 이상 모든 조합이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「농협법」, 「수협법」, 「산림조합법」, 「새마을금고법」 개정안 소관 상임위 계류 중 (25.12.1일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)

③ 조합 상임감사 선임 의무 강화

- **(현행)** 상임감사는 「지배구조법」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에서 조합장(이사장)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*임에도,

* 금융사고 예방,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, 상시적인 내부감시 등 역할 수행

- 수협, 산림조합은 상임감사 선임의무가 없고, 농협·새마을금고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은 신협에 비해 완화*된 상황

* (신) 총자산 0.2조원 이상, (농, 새) 0.8조원 이상

→ '25.9말 총자산 기준 충족 조합(개): (신) 259 (30.1%), (농) 192 (17.3%), (새) 39 (3.1%)

< 상호금융 업권별 감사제도 현황 >

구 분	신협	농협	수협	산림	새마을
감사 인원	2~3명	2명		3명 이하	
임기	4년	3년			
연임여부	가능	가능			
상임감사 (총자산 기준)	의무 (0.2조원)	의무 (0.8조원)	임의		의무 (0.8조원)

- **(개선)** 수협·산림조합에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도입하고,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3천억원으로 통일^{법, 시행령}

- 다만, 농협·새마을의 '25년 개정 법령 시행*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

*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 총자산 금액:

(농협) 1조원 → 0.8조원 ('25.4.9일~), (새마을) 자율선임 → 0.8조원 ('25.7.8일~)

④ 대형조합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

- **(현행)** 조합 대형화, 조합장에 과도한 권한집중, 금융사고 빈발 등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선진화 필요성 대두
 - 상호금융권은 「지배구조법」의 적용을 받는 타 금융회사와 달리 개별법에서 지배구조·내부통제 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나,
 -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재(중앙회에 대해서만 의무 부여)
 - * 「신협법」 §76의3, 「농협법」 §125의4, 「새마을금고법」 §63 등
- **(개선)** 우선 대형조합(신용사업 총자산 1조원* 이상)에 「지배구조법」에 준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하여 지배구조·내부통제 개선 추진^{가이드라인}
 - * '24년말 기준 168개 (농협 121개, 수협 15개, 신협 7개, 새마을 25개)
 - ① 이사회 정보 공시 확대, 감사 권한을 타 업권수준으로 확대,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이해상충 검증 강화 등 조합장 견제 강화
 - ② 이사회 및 조합장의 내부통제·위험관리 역할·책임(R&R) 명확화, 내부통제·위험관리 업무책임자, 전담조직 설치 등 내부통제 강화
 - ③ 준법제보 익명성 강화, 제보자 보호 강화, 명령휴가·직무분리 확대 등 금융사고 예방 대책 수립 의무화

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

- **(현행)**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기관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하고,
 - 담보대출 위주 취급,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소액·개인신용대출* 채무조정 실적이 저조**
 - *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신용대출 (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§3 ③)
 - ** '24.10~'25.9월 상호금융권 채무조정 승인 건수: 678건
- **(개선)** 농·수·산림, 새마을에 대출계약철회권·자료열람요구권을 도입하고, 위법계약 판단기준*인 5대 판매원칙** 내규화^{내규}
 - * 위법계약 판단기준 우선 도입 후,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소법 체계 편입 이후 도입
 - ** 적합성·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금지, 부당권유 금지
 -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채널 구축, '채무조정 요청권' 제도 홍보·고객 안내 강화 등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^{내규}

V. 향후 계획

- 감독규정 및 자율규제 신설·개정 사항은 조속히 관련 절차 착수
- 법령 개정사항은 구체적인 개정 시기·방법 등을 관계부처간 조율 후 신속히 개정 추진

< 과제별 필요 조치 및 이행 시기 >

과제명	개정 사항	이행 시기	소관 기관
1.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			
①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기준 상향	감독규정	'26년	금융위
②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강화	모범규준	'25년	금감원
③ 중앙회·조합의 유동성 규제 개선	시행세칙	'26년	금감원
2. 조합 건전성관리 강화			
①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	법, 감독규정	'26년 발의	금융위
②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	모범규준	'26년	금감원
③ 거액여신 편중 위험 관리 강화	법	'26년 발의	금융위
3.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			
① 부동산·건설업 대출규제 강화	감독규정, 세칙	'27년	금융위, 금감원
② 공동대출·PF 리스크관리 강화	모범규준	'26년	금감원
③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	감독규정, 세칙	'27년	금융위, 금감원
4.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			
① 임원 자격 제한 요건 정비·편법 장기재임 방지	법	'26년 발의	주무부처
②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및 주기 단축	법, 시행령	'26년 발의	주무부처
③ 조합 상임감사 선임 의무 강화	법, 시행령	'26년 발의	주무부처
④ 대형조합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	가이드라인	'26년	금감원
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	내규	'26년	중앙회